

「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8월 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8년 8월 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 직무대리 주현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산림소득 증대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(안 제4조)
  - ▶ 정책적 육성 및 지원
  - ▶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
  - ▶ 임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
- 사업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  - ▶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
  - ▶ 증대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자의 선정(안 제7조)
  - ▶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,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·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 
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 
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등  
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과 지원신청 및 대상  
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제외  
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  
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.
- 행정구역 면적 80%이상이 임야인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,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·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,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(林家)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임업인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임업인의 산림소득(이 조례에서 “산림소득”이라 한다)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·관리와 이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

1. 정책적 육성 및 지원
2.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
3.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(이하 “임업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자금지원

②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당 산림 자원의 경영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** ① 군수는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증대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육성정책 및 용역
2. 재배지 경영 및 관리
3. 생산·유통 및 가공
4.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및 대상)**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세부사업계획
2.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
3.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.

**제7조(지원대상자의 선정)**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.

1.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
2. 사업계획의 타당성
3.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
4.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 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

**제8조(지원제외)**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,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.

**제9조(사후관리)**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

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,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
2.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
3.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
4.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준용)**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지도·감독,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